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2021년 12월 8일 (수) 오전 9시 30분

zoom
회의장 입장 QR코드



좌장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발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이후 | 김단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법 개정 후 디지털성폭력 판결분석과 입법제안 | 조은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디지털성폭력 문제에서 플랫폼사업자 규제 | 신유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토론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희진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장)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김미정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주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 정의당 장혜영

주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목 차

발 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이후

김단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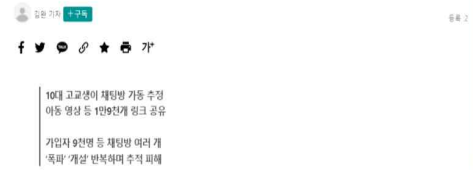
- 변화와 남은 과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김단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텔레그램 성착취

- 2019년 9월, '추적단 불꽃'에 의해 최초 보도
- 이후 주요 언론사에서 연달아 보도
- '박사방' 관련 공범만 약 6만명으로 추정
- 국민청원 동의건수 1, 2위 모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단독] 청소년 '텔레그램 비밀방'에 불법 성착취 영상 활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참여인원 : [2,168,908명]



주요 가해자 검거

'n번방', '박사방' 등 거대 채팅방 운영자 및 관리자 채팅방 가입 유료회원 등 약 3800여 명 검거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2020년 2월 14일 출범
 총 60개 단체 연대
 피해자 법률지원단 구성
 피해지원, 재판 모니터링 등 활동

주요 사건 재판 정리

◎ '박사방' 관련

- 입장료에 따라 채팅방 치등 운영
- 피해자 협박하여 성착취물 제작
- 성착취물로 고액 채팅방 홍보
-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성명(닉네임)	범행	법단죄 적용	선고결과
조주빈(박사)	'박사방' 운영	범죄단체조직죄	징역 42년, 신상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30년 부착, 가상화폐 및 유가증권 각 몰수, 1억8백98만 추징
강0우(도널드루틴)	개인정보전달, 범죄자금 현금화	범죄단체가입, 활동죄	징역 13년, 신상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천0진(달로)	홍보/모집 성착취물 제작 유포	범죄단체조직죄	징역 1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 신상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취업제한 10년
이0민(태평양)	홍보 등 '박사방' 관리, 성착취물 유포방 운영	범죄단체가입, 활동죄	징역 장기10년, 단기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취업제한 7년
임0식(블루99)	유료회원 성착취물 제작 가담	범죄단체가입, 활동죄	징역 8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취업제한 10년
정0호(오명)	유료회원 성착취물 제작 가담	범죄단체가입, 활동죄	징역 7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취업제한 10년
한0훈(김승민)	성착취/영상제작 피해자 강간	범죄단체가입, 활동죄	징역 13년, 정보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이원호(이기아)	'박사방' 홍보 관리 성착취물 유포	범죄단체가입, 활동죄	징역 12년, 정보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등록 30년
강훈(부따)	박사방 홍보관리	범죄단체조직죄	징역 1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정보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취업제한 5년
남경윤	유료회원, 피해자 협박, 성착취물 제작, 유사강간	범죄단체가입, 활동죄	1심: 징역 17년, 정보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 보호관찰 명령 -> 쌍방 항소하여 2심 진행 중

◎ 'n번방' 관련

- 피해자 협박하여 '노예'로 칭하며 성착취물 제작, 텔레그램을 통한 판매유포가 시작된 방

성명(닉네임)	범행	선고결과
문형욱(갓갓)	'n번방' 운영	징역 34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등 명령
안승진-김0영	갓갓 공범, 피해자 협박 성착취	안승진 징역 10년 / 김00 징역 8년
박0준	갓갓 공범, 성착취물 판매 및 유포	징역 4년

◎ ‘프로젝트n방’ 관련

- ‘n번방’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채팅방, 피싱사이트를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정보 취득,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성착취물 제작

성명(닉네임)	범행	선고결과
백0호(로리대장태범) 류0진	‘n번방’ 모방 성착취물 운영/공범	백0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부가 준수사항(피해자 접근 금지 등) 류0진: 징역 7년, 신상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백0찬	로리대장태범 공범, 불법촬영 및 유포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
김0일(서머스비)	로리대장태범 공범, 피싱사이트 운영	징역 7년

◎ 그 외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사건

성명(닉네임)	범행	선고결과
강0서(짱까췌)	‘피카츄방’ 운영, 박사방 성착취물 재유포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
황0성	‘짱까췌’ 공범, 아첨법 위반, 음란물 제작 배포 등	징역 1년
신0희(켈리)	‘n번방’ 이어받아 운영	징역 1년 *19년 11월 선고,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나 20년 4월 피고인 항소포기로 1심 그대로 확정
	아첨법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텔레그램 별개 사건)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신상정보공개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전0준(와치맨)	‘고담방’ 운영, 해킹, 불법촬영물 유포, 명예훼손, 아첨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신0관(혹룡령)	음란물 사이트 4개 운영, 성착취물 유포, 아첨 음란물 제작,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징역 6년
윤0동(트럼프피)	텔레그램 성착취물 운영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취업제한 10년
김0훈	텔레그램 성착취물 운영, 영상 지워달라는 여성 협박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본 텔레그램 성착취

1.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다

- 다수의 가해자, 텔레그램 성착취로 검거 이전 이미 유사한 범죄 전력 있음
- 소지자들 또한 이미 대량의 성착취물 소지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단지 '발견'되었을 뿐이다.

2.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 이목이 집중되지 않은 사건이나 제작이 아닌 판매유통 소지에는 여전히 낮은 처벌
음란물 사이트 4개 운영한 '흑통령' 징역 6년,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 김모씨 징역 10개월
- 'n번방' 두번째 운영자 '켈리', 아동·청소년 성폭력 집행유예 전력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선고. 결국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으로 다시 구속
재판 과정 내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주목을 받아 자신이 부당하게 처벌 받는다면 이미 처벌받은 동종범죄를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의 변화

1. 디지털성착취/성범죄의 심각성 인지

- 1) 디지털성착취 사건에서 유례없는 높은 형량
: 지금까지 디지털성착취는 물리적 폭력이 없는, 직접적이지 않은 범죄로 인식되어 심각하지 않게 다루어짐
그러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주요 가해자들에게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됨
사법부가 디지털성착취/성범죄의 파급력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임
- 2) 온라인 상 범죄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 이번 판결은 신원을 모른다고 해도 낙넫임을 통해 특정인임을 인식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디지털 성범죄는 성착취물 제작 뿐 아니라 이를 유포하고 시청하고 소지하고 댓글을 남기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위들로 인해 비로소 '완성'됨. 이번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은 디지털 범죄, 특히 성착취 범죄의 특성을 정확히 짚음

2. 제도적 변화, 'n번방 방지법'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명시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대상아동·청소년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의제기간 연령 상향

2) 처벌 범위 확대 및 처벌 상향

- 성착취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처벌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등 처벌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지인능숙 합성 등) 편집 처벌
- 온라인 그루밍 처벌
- 형량 상향 등 양형기준 변경

< 사업자 의무강화 주요내용 >

	기존	개선
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	· 웹하드사업자만 대상	· 전 인터넷 사업자 대상 (웹하드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삭제 대상	· 불법촬영물에 한정	·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 (불법촬영물 + 불법편집물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재수단	· 과태료 부과(2천만원 이하)	·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출처: 행정안전부>

3) 사업자 의무강화

- 삭제의무 성범죄물 불법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로 확대
- 삭제 및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 모든 사업자로 확대

3. 피해지원 강화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강화

2)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 상담소 운영

- 2021년 7개 운영, 2022년 10개로 확대 예정

3) 지자체별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신설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통합지원시스템 온 서울 세이프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n번방' 피해자에 최대 5000만원 지원...개명도 도와준다

중앙일보 | 입력 2022.04.02 16:44 | 업데이트: 2022.04.02 17:03

박사라 기자

텔레그램 '빅사방' 상악취 피해자들이 치료에 필요한 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생계가 곤란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도 받는다.

검찰, 피해자에 치료비·생계비 준다



남아있는 과제들

1. 디지털성착취/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여전히 낮은 인식

: 초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음
소자·시청에 대한 낮은 처벌

2.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운영체제 보완

: 단순 인력 확충이 아닌 전문 인력 확보 필요

3. 교육을 통한 성평등 인식 확산

: 근본적 변화를 위한 성평등 교육

디지털성착취는 계속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와 일상 회복은 아직도 쉽지 않다.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면
제2의 n번방, 제3의 n번방은 언젠가 등장할 수 있다.



법 개정 후 디지털성폭력 판결분석과 입법제안

조은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I.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발생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2020. 5. 19. 기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전후 내용 비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현황>

조항	항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u>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u>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

		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u>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u>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u>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u>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u>
	4	신설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u>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5	신설	<u>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1	<u>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u>	
	2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u>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u>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조항	항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	신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발생 이후 법률 개정 및 정책 변화의 의의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발생 이후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형사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됨. 개정 방향은 주로 법정형 상향을 통한 처벌 강화와 처벌 가능한 행위 태양 확대였음. 일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영리목적 비동의 유포죄의 개정 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크게 상향됨. 또한 소지·구입·저장·시청죄(아래에서는 ‘소지죄’라고 함), 디지털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죄 등이 신설됨.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역시 개정 후 법정형이 모두 징역형 이상으로 상향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됨. 청소년성보호법에도 광고·소개·시청죄 등이 신설됨. 이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감심을 제고하고 관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임.
- 정부 역시 2020. 4. 23.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하면서 오프라인 성범죄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현행 법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디지털 범죄 양상을 모두 아우르지 못한다는 인식 하에 성범죄 예방과 사후처리 양방향의 제도적 허점을 메우겠다는 입장을 밝힘.

3. 법 개정 후 판결문 분석의 방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은 2021. 1. ~ 2021. 6.까지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 등록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15조 위반으로 처벌된 판결문 중 무작위로 추출한 618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위반으로 처벌된 판결문 중 무작위로 추출한 154건에 드러난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각 선고형의 비율과 정도, 양형 판단, 병과형, 부수처분 등을 살펴봄.

- 이중 성폭력처벌법 위반 판결문은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경우 289건, 개정 후 법률이 적용된 329건으로 나누어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

- 병과형(몰수, 추징, 파기 등)과 부수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은 새로운 피해 발생 예방 및 재범 방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발생 이후를 기준으로 개정 전후 법률 적용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함.

- 양형 이유 역시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 중대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있으므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발생 이후를 기준으로 개정 전후 법률 적용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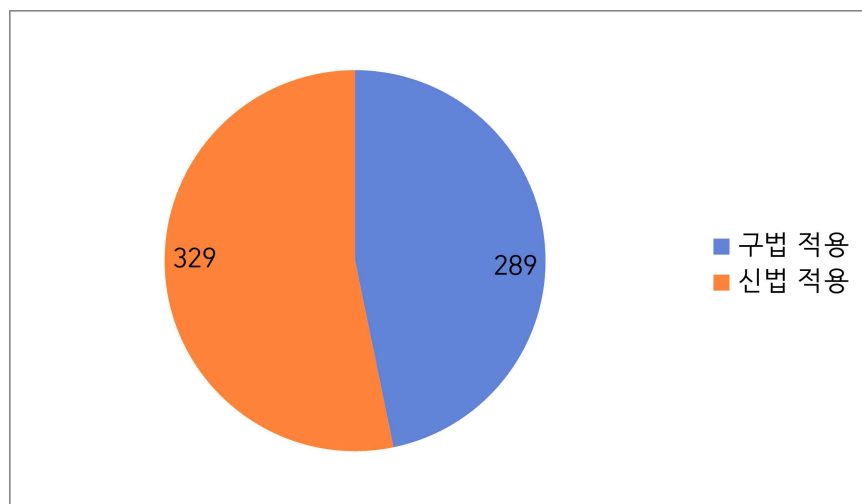
-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발생 및 법률 개정 이후 법률 개정의 취지가 판결문에 반영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함.

II. 법 개정 전후 선고형 비교 분석 :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중심으로

1. 법원 판결 통계

- 분석 대상 판결은 2021. 1. ~ 2021. 6.까지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 등록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15조로 처벌된 형사판결 중 무작위로 추출한 618건임.
- 이중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법’ 이라고 함)이 적용된 경우는 289건(46.7%), 2020. 5. 19. 개정 후 성폭력처벌법(아래에서는 ‘신법’ 이라고 함)이 적용된 경우는 329건(53.2%)임.

<대상판결 중 신, 구법 적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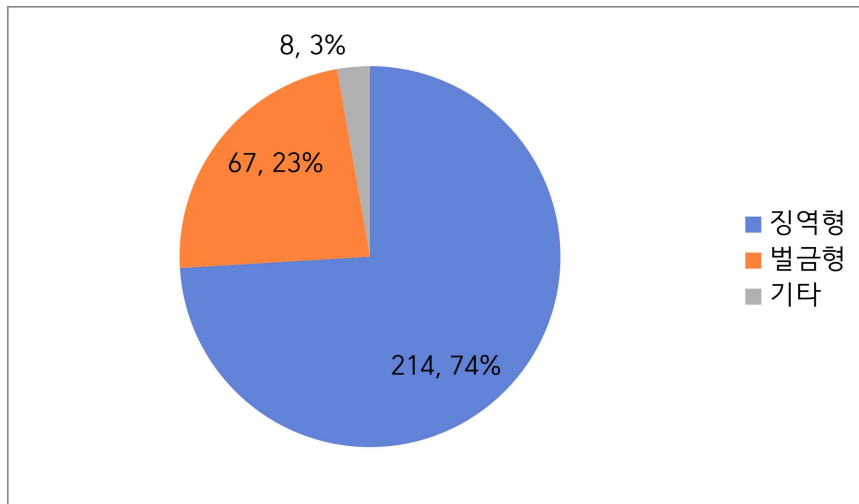


2. 법률 적용에 따른 선고형 통계

가. 구법 적용 시

1) 각 선고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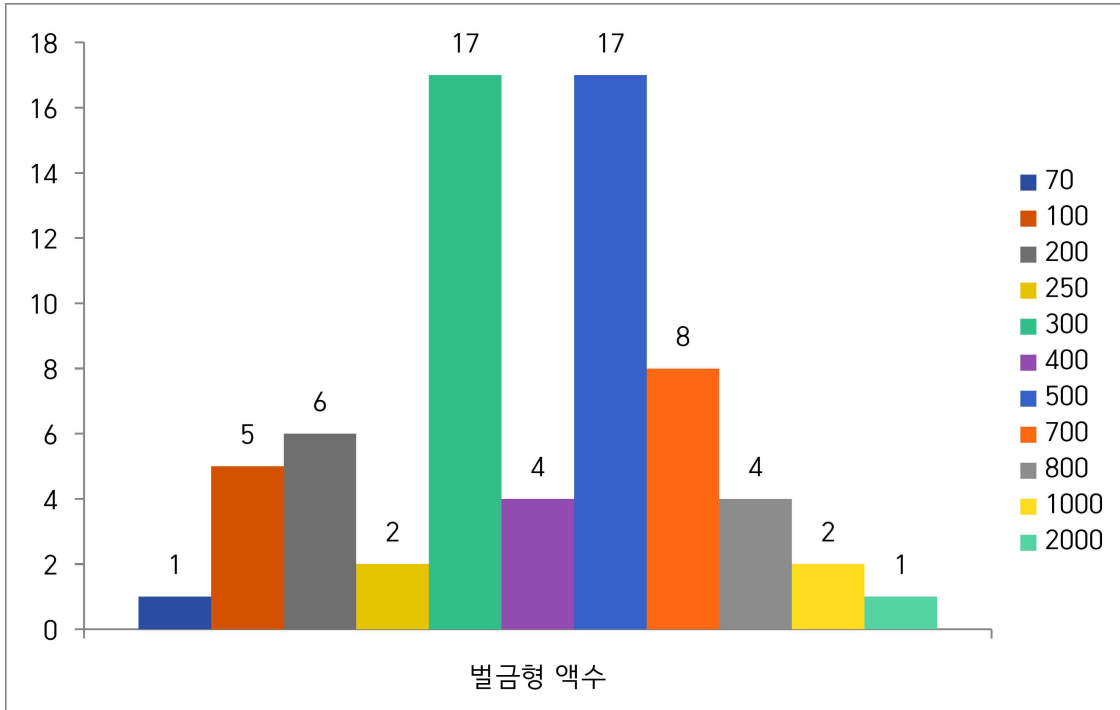
<각 선고형 비율>



□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된 판결문 289건 중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67건, (23.1%),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214건(74.0%), 피고인이 여러 명이거나 선고유예 등 기타는 8건(2.7%)임.

2) 벌금형 관련 통계

〈벌금형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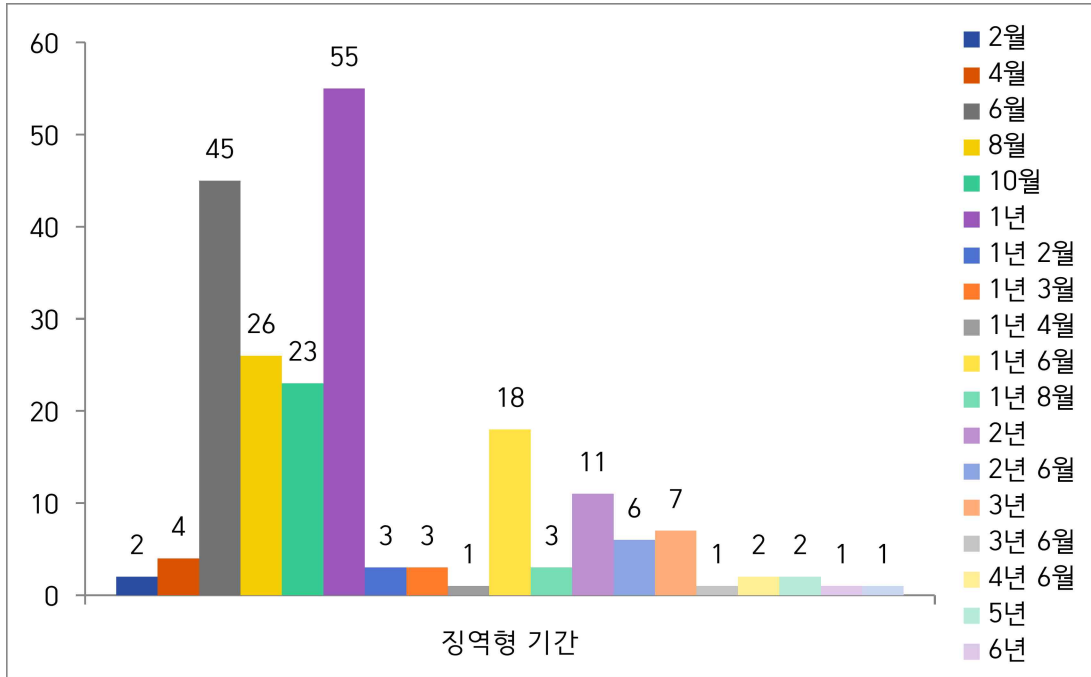


□ 벌금형 선고된 판결문 67건 기준으로 벌금 70만 원(1건), 벌금 100만 원(5건), 벌금 200만 원(6건), 벌금 250만 원(2건), 벌금 300만 원(17건), 벌금 400만 원(4건), 벌금 500만 원(17건), 벌금 700만 원(8건), 벌금 800만 원(4건), 벌금 1,000만 원(2건), 벌금 2,000만 원(1건)임.

□ 벌금형의 평균은 약 452만 원임. 벌금형 최고 액수는 2,000만 원, 최저 액수는 70만 원임.

3) 징역형 관련 통계

<징역형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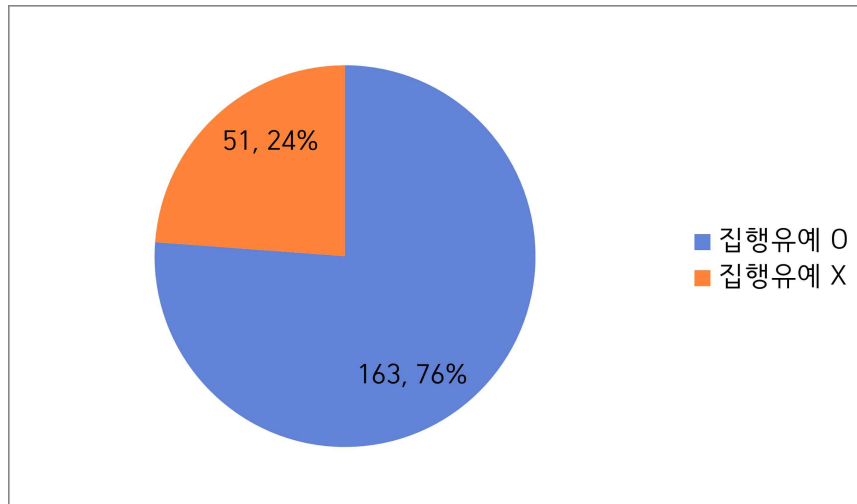


□ 징역형 선고된 판결문 214건 기준으로 징역 2월(2건), 징역 4월(4건), 징역 6월(45건), 징역 8월(26건), 징역 10월(23건), 징역 1년(55건), 징역 1년 2월(3건), 징역 1년 3월(3건), 징역 1년 4월(1건), 징역 1년 6월(18건), 징역 1년 8월(3건), 징역 2년(11건), 징역 2년 6월(6건), 징역 3년(7건), 징역 3년 6월(1건), 징역 4년 6월(2건), 징역 5년(2건), 징역 6년(1건), 징역 9년(1건) 임.

□ 징역형의 평균은 약 14개월, 최고는 9년, 최저는 2월임.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디지털 성폭력 외에 다른 범죄가 경합된 사례가 상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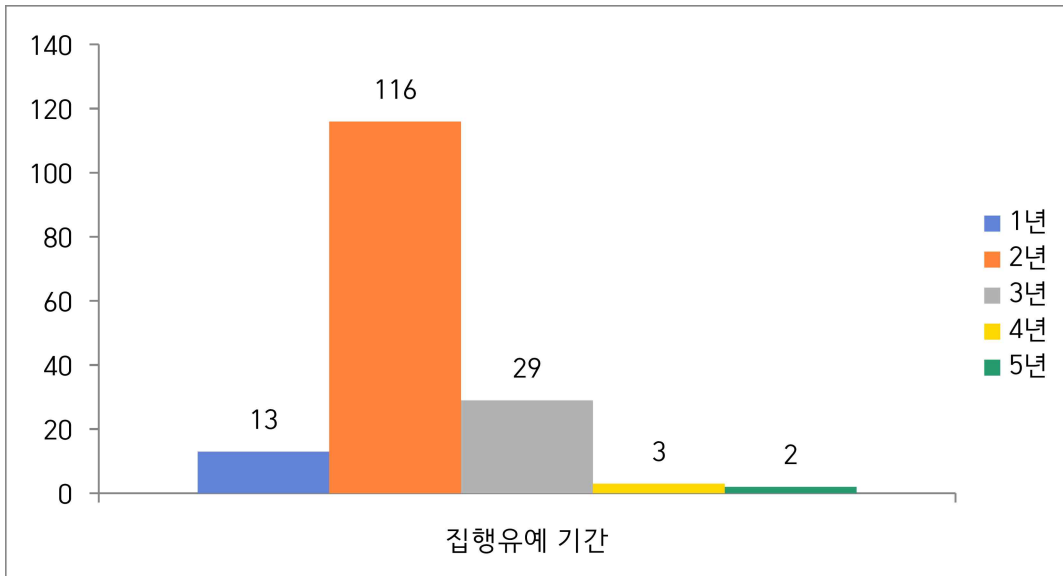
4) 집행유예 관련 통계

<징역형 선고 시 집행유예 비율>



- 징역형 선고된 경우 전체 214건 중 집행유예는 163건(76.2%)임. 벌금형에 집행유예는 1건임.
- 특히 징역 1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안 중 집행유예 비율은 85.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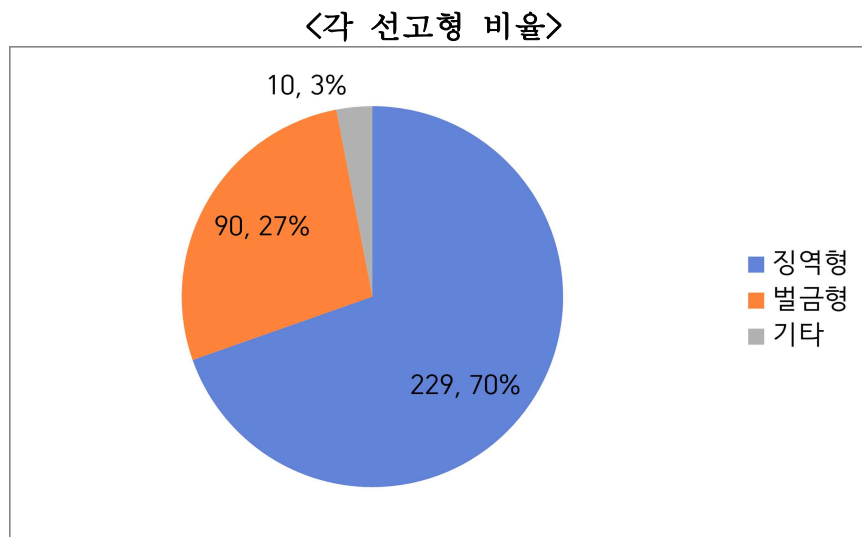
<집행유예 통계>



□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된 판결문 163건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1년(13건), 2년(116건), 3년(29건), 4년(3건), 5년(2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평균은 약 2.1년임.

나. 신법 적용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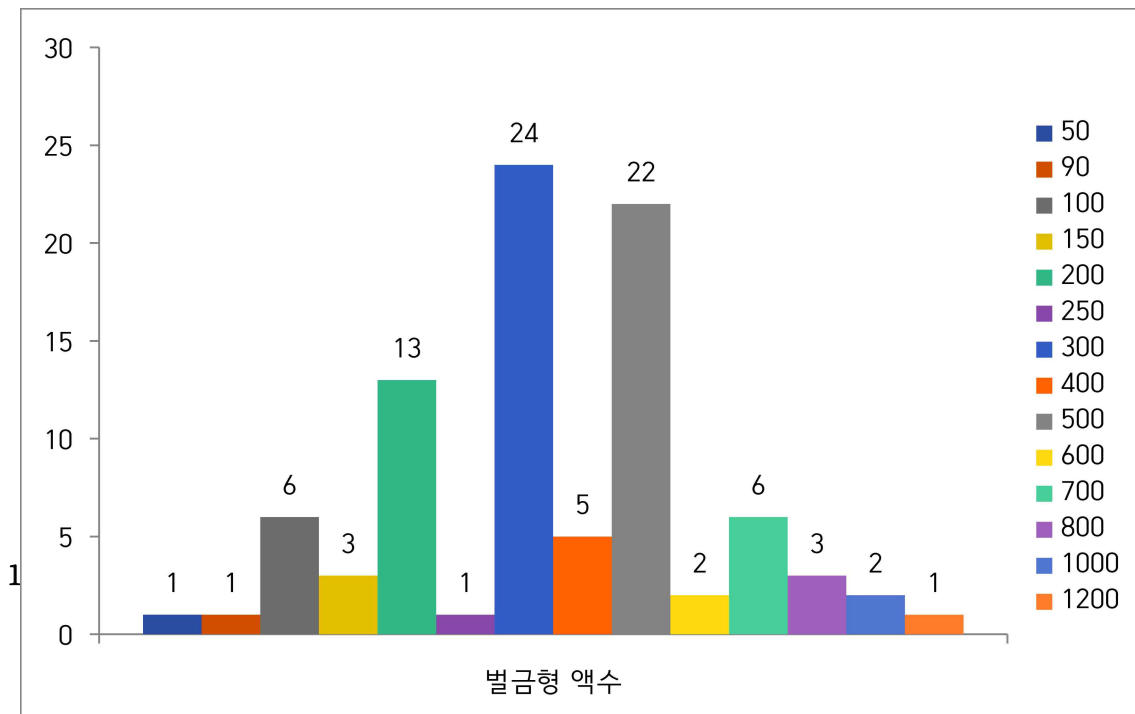
1) 각 선고형 비율



□ 신법이 적용된 판결문 329건 중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90건(27.3%),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229건(69.6%), 피고인이 여러 명이거나 선고유예 등 기타는 10건(3.0%)임.

2) 벌금형 관련 통계

〈벌금형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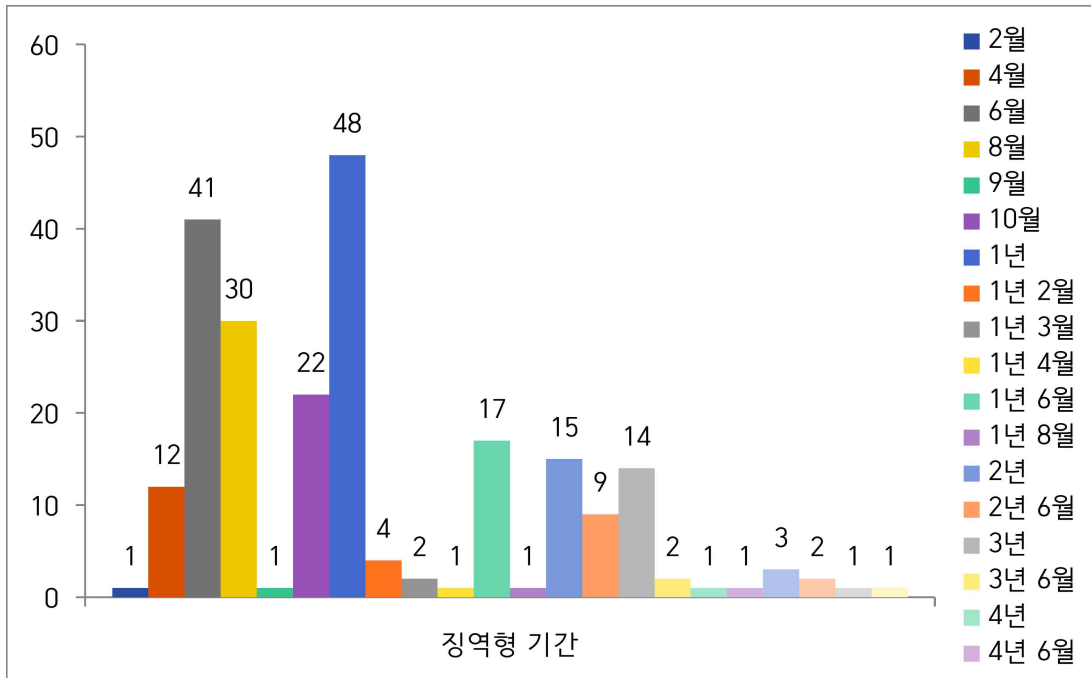
□ 벌금형 선고된 판결문 90건 기준으로 벌금 50만 원(1건), 벌금 90만 원(1건), 벌금 100만 원(6건), 벌금 150만 원(3건), 벌금 200만 원(13건), 벌금 250만 원(2건), 벌금 300만 원(24건), 벌금 400만 원(4건), 벌금 500만 원(22건), 벌금 600만 원(2건), 벌금 700만 원(6건), 벌금 800만 원(3건), 벌금 1,000만 원(2건), 벌금 1,200만 원(1건)임.

□ 벌금형의 평균은 약 392만 원임. 벌금형 최고 액수는 1,200만 원, 최저 액

수는 50만 원임.

3) 징역형 관련 통계

<징역형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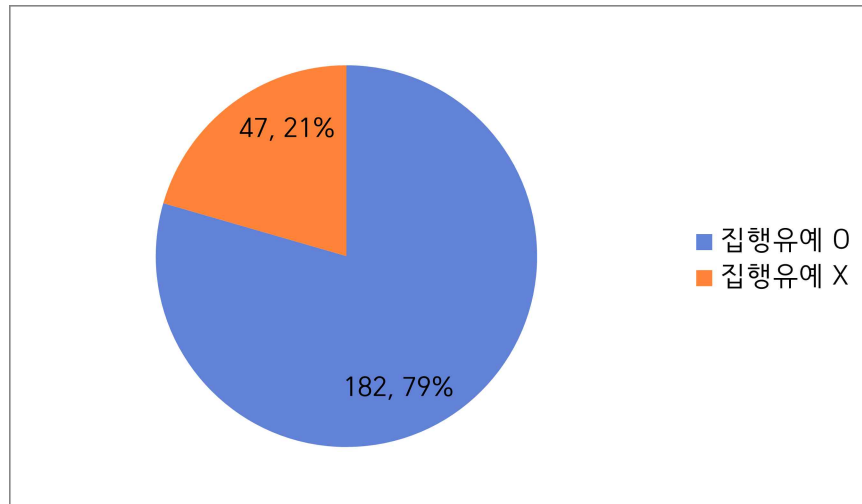


□ 징역형 선고된 판결문 229건 기준으로 징역 2월(1건), 징역 4월(12건), 징역 6월(41건), 징역 8월(30건), 징역 9월(1건), 징역 10월(22건), 징역 1년(48건), 징역 1년 2월(4건), 징역 1년 3월(2건), 징역 1년 4월(1건), 징역 1년 6월(17건), 징역 1년 8월(1건), 징역 2년(15건), 징역 2년 6월(9건), 징역 3년(14건), 징역 3년 6월(2건), 징역 4년(1건), 징역 4년 6월(1건), 징역 5년(3건), 징역 6년(2건), 징역 9년(1건), 징역 10년(1건)임.

□ 징역형의 평균은 약 16개월, 최고는 10년, 최저는 2월임. 구벌 적용된 경우와 유사하게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상당수가 디지털 성폭력 외에 다른 범죄가 경합된 사안임.

4) 집행유예 관련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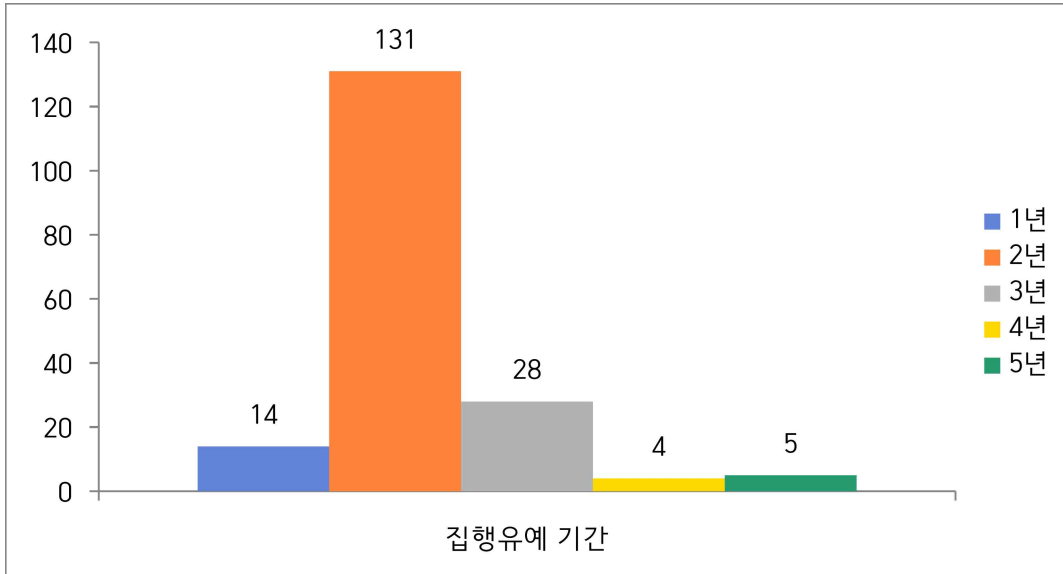
<징역형 선고 시 집행유예 비율>



□ 징역형 선고된 경우 229건 중 집행유예는 182건(79.4%)임. 벌금형에 집행유예는 1건임.

□ 특히 징역 1년 이하 선고 시 집행유예는 89.0%임.

<집행유예 통계>



□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된 판결문 182건 중 집행유예 1년(14건), 2년(131건), 3년(28건), 4년(4건), 5년(5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평균은 약 2.2년임.

다. 법률 적용에 따른 선고형 비교

<법률 적용에 따른 선고형 비교>

	구법	신법
벌금형 : 징역형	23.1% : 74.0%	27.3% : 69.6%
벌금형 평균	약 452만 원	약 392만 원
징역형 평균	약 14개월	약 16개월
징역형 선고 시 집행유예 부가 비율	76.2%	79.4%
징역 1년 이하 선고 시 집행유예 부가 비율	85.2%	89.0%

〈법률 적용에 따른 양형 비교〉

형량	구법	신법
6월 이하	23.8%	23.6%
6월 초과~1년 이하	48.6%	44.1%
1년 초과~1년 6월 이하	11.7%	10.5%
1년 6월 초과~2년 이하	6.5%	7.0%
2년 초과~2년 6월 이하	2.8%	3.9%
2년 6월 초과~3년 이하	3.3%	6.1%
3년 초과	3.3%	4.8%

- 신법을 적용한 경우 구법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선고된 징역형의 평균이 약간 상향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신법 적용 시 전체 판결문 건수 대비 징역형 선고 비율은 구법 적용 시보다 감소함. 선고된 벌금액 평균도 신법 적용 시 감소함.

-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선고형이 징역 1년 이하인 경우임. 법 개정 이후 신설된 소지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임. 소지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디지털 성폭력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법원 양형 관행상 징역 1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음. 일례로 2021. 1. 1.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소지 등 죄의 기본 권고 형량은 ‘6월~1년’으로 설정되어 있음.

- 개정 전후 법률 적용 여부에 따라 선고형 구간을 나누어 비교한 결과 신법 적용 시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구법 적용 시보다 일관되게 감소함. 반면 동일 영역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신법 적용 시 구법 적용한 경우에 비해 증가함.

라. 소결

□ 앞서 살펴본 사실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 법정형은 대폭 상향되었으나 실제 신고형은 개정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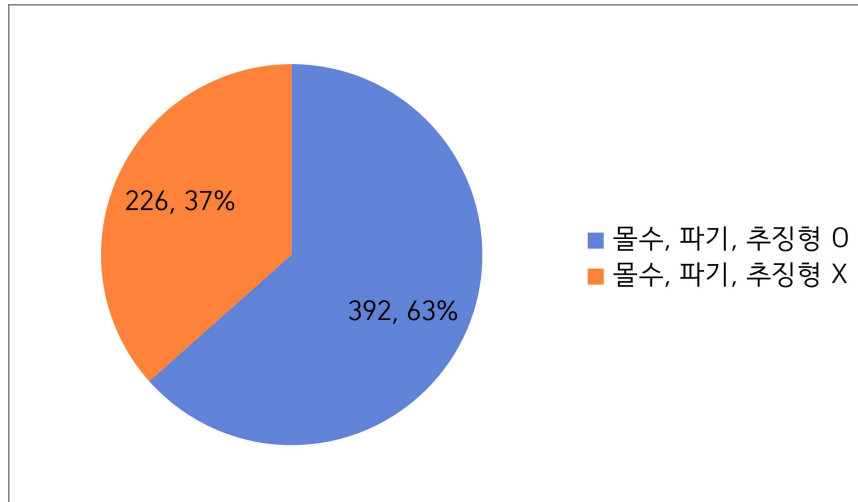
□ 반면 신법 적용 시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증가함. 특히 징역 1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집행유예 비율은 각 구간에서 일관되게 증가함.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는 체감되는 처벌의 무게가 낮게 느껴질 수 있음. 신설된 소지죄 등의 신고형으로 추정되는 구간에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처벌 가능한 가해행위의 태양을 확장하여 디지털 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 법률 개정의 취지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로 보임.

Ⅲ.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발생 및 법 개정 후 부가형(몰수, 파기, 추징), 부수처분 현황 분석

□ 아래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발생 및 법률 개정 이후 신고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판결문 618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판결문 154건을 대상으로 부가형(몰수, 파기, 추징 등) 및 부수처분 현황을 분석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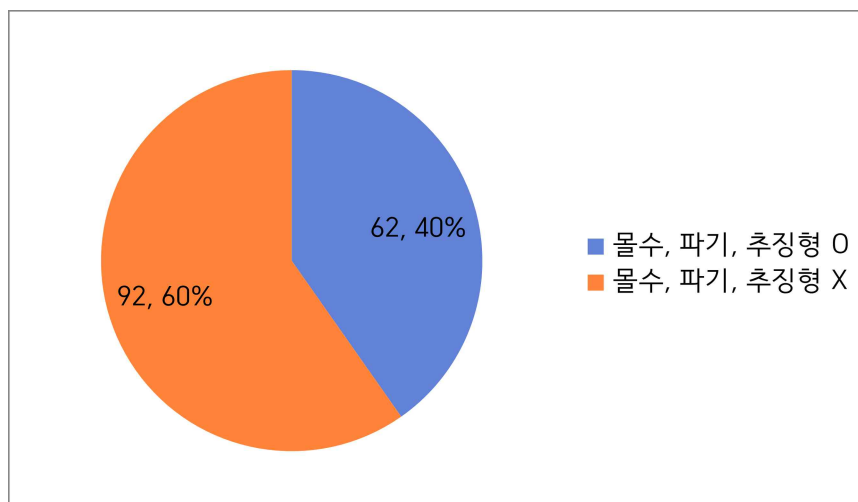
1. 부가형 통계

<몰수, 파기(폐기), 추징형 통계-성폭력처벌법>



- 성폭력처벌법 위반 판결문 618건 중 몰수, 파기, 추징형 등이 단일하게 또는 중복으로 선고된 경우는 392건(63.4%), 선고되지 않은 경우는 226건(36.5%)임.

<몰수, 파기(폐기), 추징형 통계-청소년성보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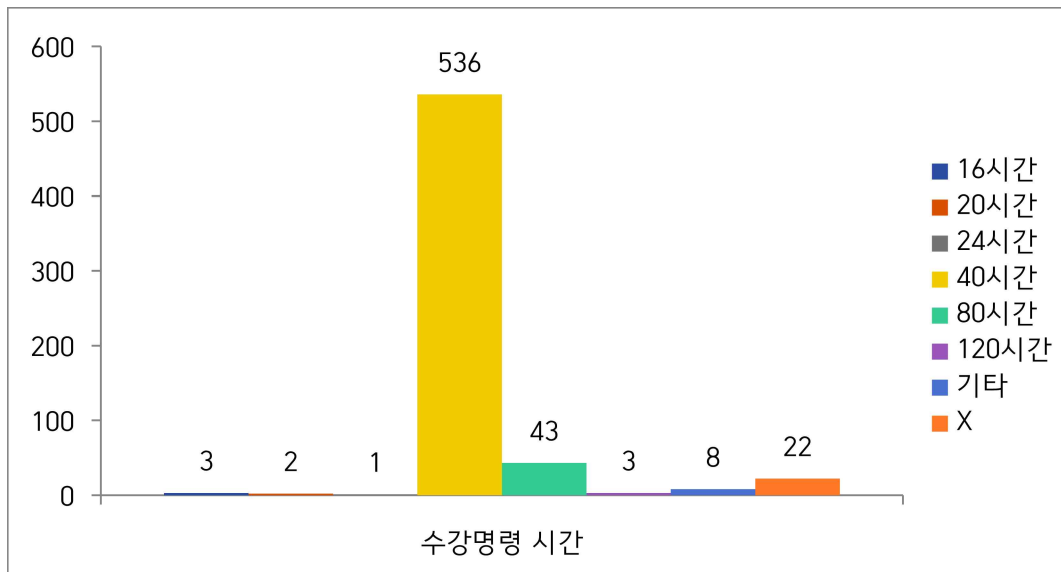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판결문 154건 중 몰수, 파기, 추징형 등이 단일하
 게 또는 중복으로 선고된 경우는 62건(40.2%), 선고되지 않은 경우는 92건
 (59.7%)임.

2. 부수처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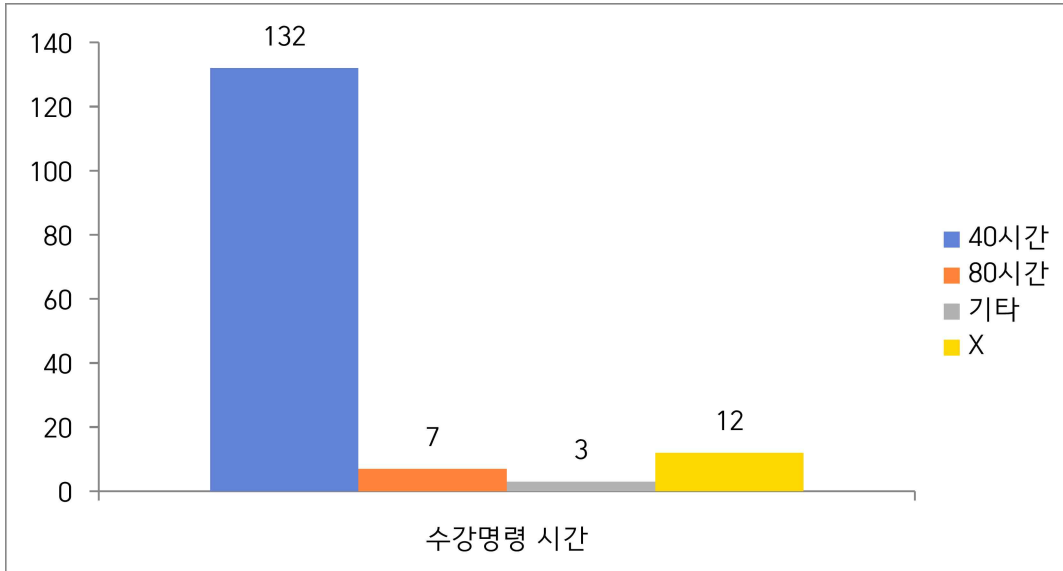
가. 수강명령

<수강명령 통계-성폭력처벌법>



□ 성폭력처벌법 위반 판결문 618건 중 수강명령은 588건(기타 8건 제외,
 90.2%)에 부과되었으며, 판결문 588건 기준 수강명령 평균은 약 43시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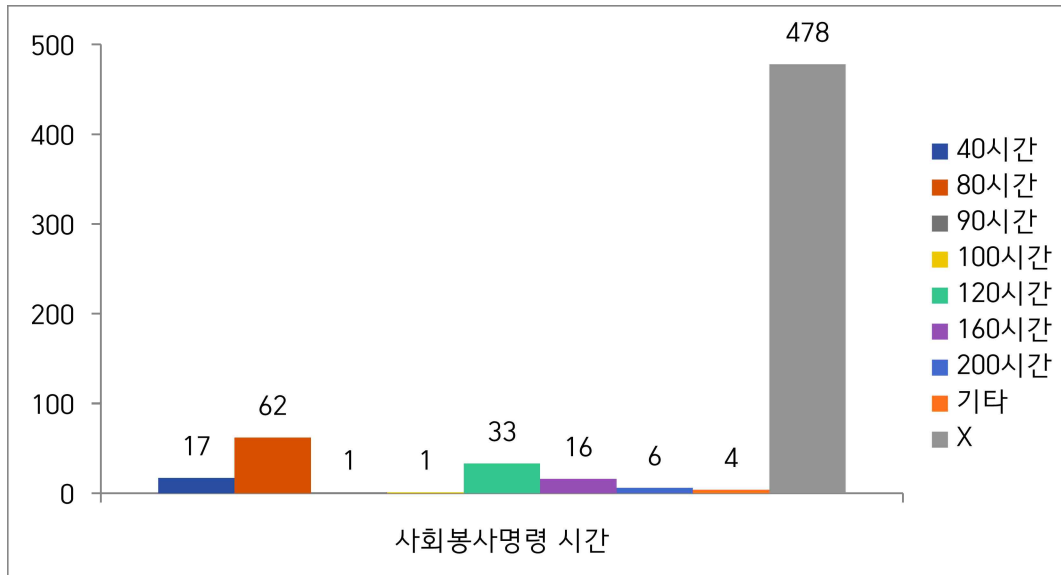
<수강명령 통계-청소년성보호법>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판결문 154건 중 수강명령은 139건(기타 3건 제외)에 부과되었으며, 판결문 139건 기준 수강명령 평균은 약 42시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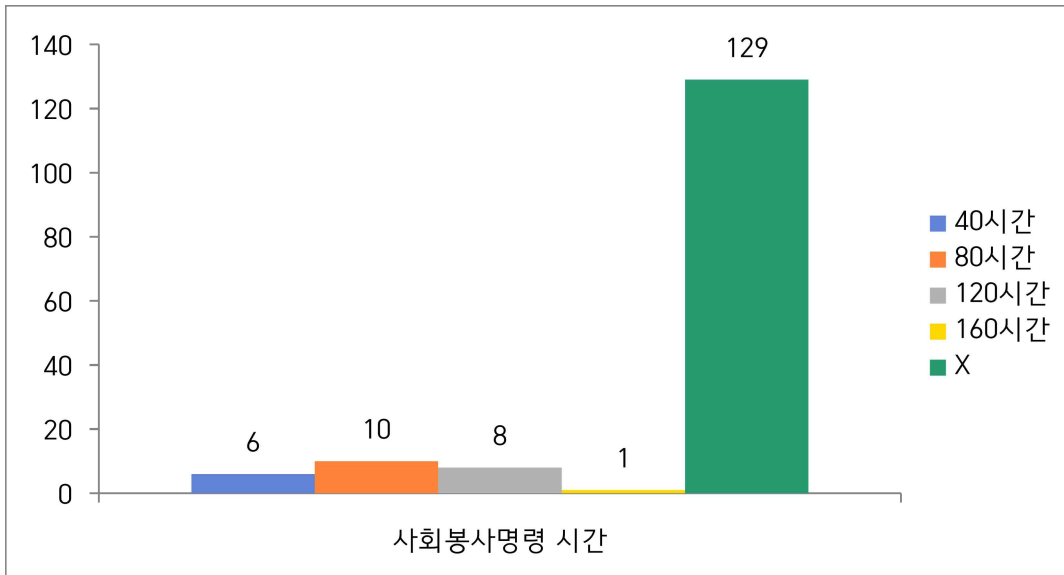
나.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 통계-성폭력처벌법>



- 성폭력처벌법 위반 판결문 618건 중 사회봉사명령은 136건(기타 4건 제외, 22.0%)에 부과되었으며, 판결문 136건 기준 사회봉사명령 평균은 약 99시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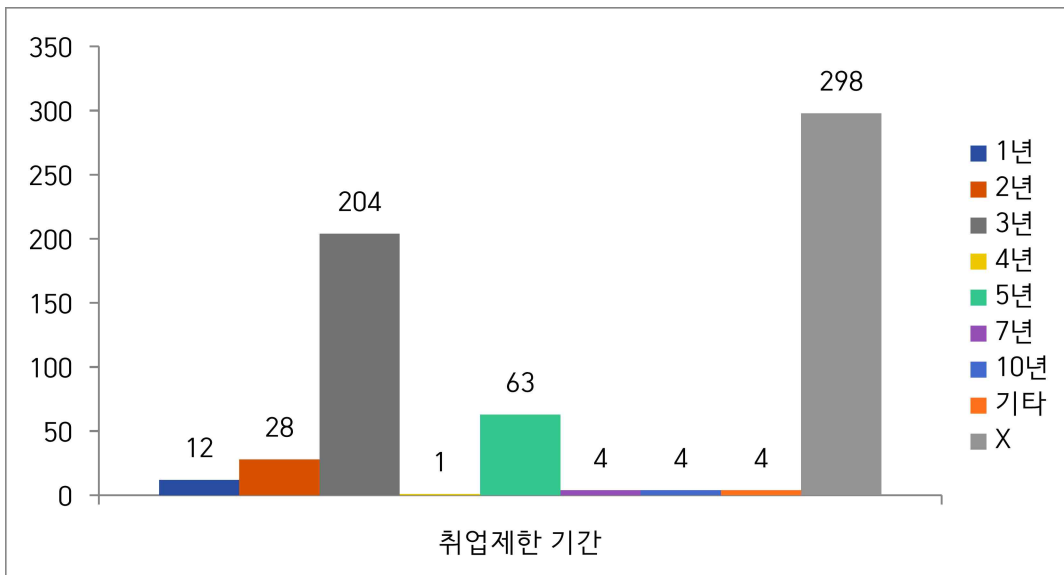
<사회봉사명령 통계-청소년성보호법>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판결문 154건 중 사회봉사명령은 25건에만 부과됨.

다. 취업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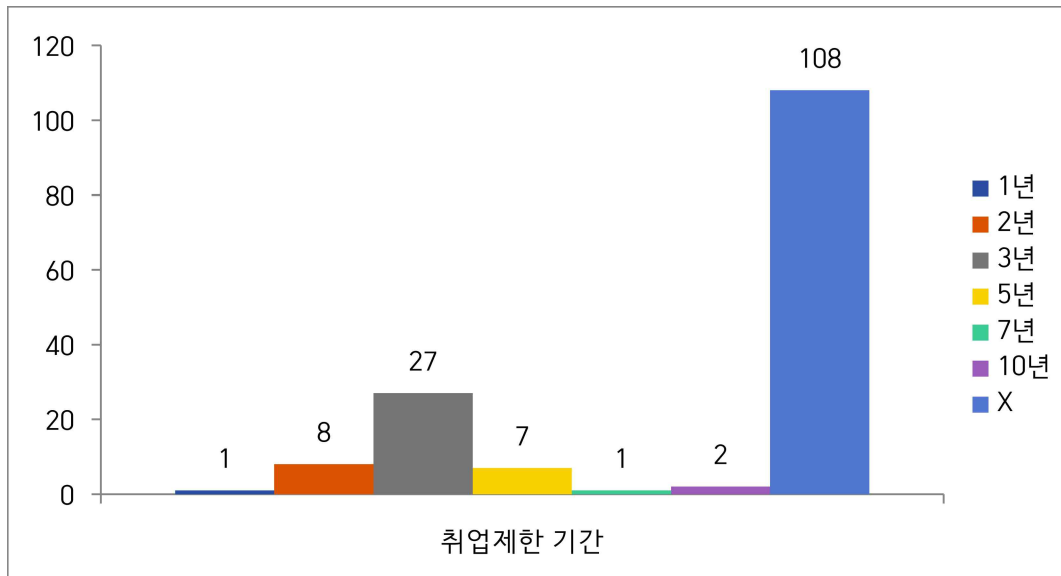
<취업제한 통계-성폭력처벌법>



□ 성폭력처벌법 위반 판결문 618건 중 취업제한은 316건(기타 4건 제외),

51.1%)에 부과됨. 부과되지 않은 경우는 298건임(48.2%). 판결문 316건 기준 취업제한 기간 평균은 약 3.3년임.

〈취업제한 부가 통계-청소년성보호법〉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판결문 154건 중 취업제한은 46건에 부과됨. 판결문 46건 기준 취업제한 기간 평균은 약 3.4년임.

라. 기타 부수처분

□ 그 외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판결문 618건 기준 12건(기타 1건 제외),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과된 경우는 2건(기타 1건 제외)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판결문 154건 중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된 경우는 1건이었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된 경우는 없음.

□ 기타 부수처분이 부과된 경우는 대부분 디지털 성폭력 외에 오프라인 성폭력 등이 경합된 사안이었음.

3. 소결

- 디지털 성폭력의 주된 피해 중 하나는 유포 불안임. 복제, 유포가 쉬운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피해자는 가해자가 검거되어 처벌되어도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음. 법원이 가해자가 제작, 소지한 성착취물 및 해당 성착취물이 저장된 디지털 기기를 몰수, 파괴한다면 피해자의 유포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임. 따라서 새로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수강명령은 대부분 사안에서 부과되었지만 평균 40시간에 그침. 재범률이 높은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상 짧은 시간의 교육만으로 재범률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음.
- 사회봉사명령은 부과되는 비율이 높지 않으며, 판결문만으로 범죄 예방이나 재범 방지 측면에서 구체적 실효성을 가늠할 수 없어 일정 결론을 내기 어려움.
-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성폭력의 주된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취업제한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런 측면에서 분석 대상 판결 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례에서 취업제한 부과 비율이 높지 않게 나타난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지점임.

IV. 양형 판단의 문제점

1.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견 수렴 당시 제기된 문제점

□ 2020. 10. 20.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존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음. 당시 문제가 된 주된 내용은 양형기준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이라는 점이었으며, 각 단체는 초범, 처벌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 몇몇 양형기준에 대한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함.

□ 해당 토론회를 비롯하여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이 제기한 기존 양형의 문제점은 자료집, 의견서의 형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일부 반영함.

□ 양형판단은 해당 범죄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함. 아래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발생 및 법률 개정 이후 선고된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시민사회 등이 제기한 양형판단의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고찰해보고자 함.

2. 법률 개정 및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신설 이후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양형 판단의 문제점

가. 별개 범죄 구성요건을 감형 사유로 판단한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4. 14. 선고 2020고단3875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방법, 기간,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발각 후 불법촬영물을 삭제하여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3. 17. 선고 2020고단2081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양이 방대하고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해당 음란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주 : 피고인은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에게 문화상품권 6만 원 권의 아이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51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아 이를 다운로드 받고 소지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의 직업상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감형 사유로 판단한 경우

광주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1고단330

선고형 :

벌금 700만 원, 수강명령 40시간

양형이유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주 : 소지한 성착취물 파일 개수 363개).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여겨 스스로 태권도사범의 일을 포기하기까지 한 점, 소지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고단5324

선고형 :

벌금 800만 원, 수강명령 40시간

양형이유 :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부추겨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주 : 피고인 소지 성착취물은 판결문 내용상 박사방, N

변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결과물로 추정되며 소지한 파일 개수는 1,125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방사선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여러 번 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잘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다수 피해자 발생, 다수 성착취물 제작, 소지했음에도 초범으로 판단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1고단733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주 : 범행 횟수 109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한 명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2. 5. 선고 2020고단1312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양형이유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주 : 소지한 성착취물 파일 개수 10,623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해자 특정되지 않거나, 피해자 신원 식별 어렵다는 점 등이 감형 사유로 판단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1고단946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이 증거가 될 성착취물을 삭제한 점을 감형 사유로 판단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고단3801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양형이유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며,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음란물은 이후 스스로 삭제하고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1고단431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 폐기

양형 이유 :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은 점
-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나 도로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여성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행위는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촬영물의 복제, 전송이 용이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처벌 필요성이 큰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1인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영상 촬영 후 스스로 촬영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바.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심리치료,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기부 등을 감형 사유로 판단한 경우

수원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1노796

선고형 :

원심판결 파기(원심 선고형 징역 2년, 수강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 몰수), 징역 1년, 수강명령 80시간, 취업제한 3년

양형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48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더욱이 자신의 아내와 장모에게도 총 8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1년 및 2015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피고인의 아내, 장모, 피해자 BA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들 중 대부분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지는 않았고 위 동영상 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A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에 300만 원을 기부한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두 번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고단4891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부추겨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구입한 이 사건 영상물의 수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주 : 소지한 성착취물 파일 개수 8,649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기타 피고인 중심의 감형 사유를 적용한 경우

-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의 선처 탄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한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감형 사유로 판단한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12. 선고 2020고단4077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장소 및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1고단1004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양형 이유 :

1. 후원금을 입금하고 국내 영상(불법 촬영물 등)을 볼 수 있는 비밀 클럽에 가입

하여 'I'파일을 다운로드, 소지했다. 언론에 텔레그램 'K', 'I'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보도가 대서특필되고 그 제작 경위가 알려져 크게 논란이 되던 시점에 오히려 그 이름을 내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2020. 5.경까지 상당기간 소지하며 열람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텔레그램 채팅방 'I' 등에서 유포된 것으로 수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을 착취하여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1. 현재는 성착취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배우자와 어린 딸을 부양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피고인의 고령, 젊은 나이 등을 감형 사유로 판단한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16. 선고 2021고단4307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카메라로 무단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 및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고단4964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부추겨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고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 파일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과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를 감형에 반영한 경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 5. 26. 선고 2020고단273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양형 이유 :

○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촬영된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되는 상해 정보보다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에 그치지 않고 감금과 강제촬영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교제하는 여성을 상대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일환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음에는 처벌을 원했으나 이를 번복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직접 이 법정에 출석하여 “현재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했고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4. 예비군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20고단2120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양형 이유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자의 딸이나 제3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다른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만 보일 뿐 피해자에게 아무런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0년 전 징역형이 선고를 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외부에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은 경우

창원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고단2849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양형 이유 :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한 신체 부위가 외부에 노출된 부분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그쳤음에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 경우

수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고단8610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 폐기

양형 이유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 피해자 G에게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F의 처벌 불원서가 2021. 4. 26., 피해자 G의 처벌불원서가 2021. 5. 18.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기차역, 지하철역, 버스 내부, 점포, 놀이공원, 커피전문점, 피고인의 회사 동료의 주거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인,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약 1년 2개월 동안 1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2020. 7. 24.까지 소지하는 등 범행 기간 및 횟수, 촬영한 영상물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여성들의 신체를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기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여성화장실에 침입까지 하였고 그들의 신체를 촬영한 횟수가 6회에 이르는 점 등

3. 소결

- 촬영·제작, 유포, 판매, 소지 등은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에 별개로 규정된 구성요건임. 즉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소지하였으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률 적용의 문제이지, 양형의 문제가 아님. 그럼에도 상당수 판결이 별개 구성요건이 없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판단하고 있음.
- 예시로 든 사안처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직업에 종사하거나 다수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한다는

점은 피해 예방 차원에서 취업제한의 이유가 되어야 할 내용임. 그러나 다수 판결문이 피고인의 직업을 피고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감형 사유로 삼고 있음.

- 2021. 1. 1.부터 시행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처벌전력 없음’에서 제외됨. 그러나 상당수 판결문이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여전히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판단하였음.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제작되는 상당수 성착취물의 특성상 피해자 신원은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아님에도 유리한 정상으로 포섭됨.
-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은 범행 결과이자 증거임. 피고인이 시청 후 성착취물을 삭제한 것은 범행을 감추고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음. 그럼에도 몇몇 판결문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기재함.
-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심리치료,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기부 등은 디지털 성착취물 공유 커뮤니티 등에서 이른바 ‘감형 전략’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감형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기부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몇몇 판결문이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이라고 평가함.

□ 그 외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거나, 피고인의 나이를 주된 감형 사유로 판단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적관계가 있다는 점을 비교적 경한 처벌의 근거로 삼거나, 외부에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것을 피고인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하거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을 뿐임에도 처벌을 감경하는 등 기준에 지적인 문제점이 반복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됨.

V. 결론

□ 대상 판결문 분석 결과 선고된 징역형 평균이 증가하거나, 양형판단 시 디지털 성폭력의 해악을 언급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변화된 측면도 있음. 그러나 그와 같은 변화는 강화된 법정형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아쉽게 느껴짐.

□ 올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중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박사방 조직, N번방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음. 각 사건의 주범(운영자)인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42년형, 징역 34년형을 선고받음.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하여 상당수 피해자 지원 단체 및 시민들은 해당 판결이 이례적인 판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성폭력 사건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촉구하였음.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우리 사회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노선이

한국성폭력 상담소

※ 본 발제문은 피해지원TF가 지난 2년 동안 디지털성폭력피해생존자 지원 과정에서 경험하고 포착한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피해지원TF 여섯 기관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이하 텔공대위)는 2020년 2월 14일 그 출범을 선포하였다. 2019년 12월부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탁틴내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주축으로 하여 초동모임을 시작하였으며, 텔레그램 등 집단적 성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했다. 그 무렵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피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각 상담소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텔공대위 구성 이후 개별 기관들에서 진행하던 법률/의료/상담 지원 등을 좀 더 통합적인 관점으로 진행하기 위해 피해지원TF를 구성하였다. 피해지원 TF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탁틴내일, 다시함께상담센터,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다.

1. 텔공대위의 피해자 연계 및 지원 과정

디지털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담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각 상담소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었으나, N번방을 비롯하여 박사방 등 집단적 성착취 피해가 보고되거나,

피해자가 직접 상담소를 찾기 시작한 것은 2019년 말부터다.

텔공대위와 피해자들이 연결된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텔공대위에 이미 연대하고 있는 상담소에 텔레그램성착취피해자들이 직접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첫번째, 텔레그램성착취피해자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이 공대위에 결합한 경우가 두 번째. 각 기관이 이미 지원하고 있는 내담자 중 이전까지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조주빈이나 문형욱, 남경읍 등 가해자들이 검거되면서 텔레그램 주요 가해자에 의한 피해로 밝혀진 경우는 세번째다. 그 외에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 접수한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과정에서 국선변호사로 연결하거나 민변 혹은 상담기관으로 연계하기도 하였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기본이념)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공대위에서 2년간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지원하면서 다양한 제도적 자원을 피해자에게 안내하고 연계해왔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크게 피해상담지원 (심리정서지원),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법률적 지원, 의료기관 연계 및 피해자 치료비 지원, 그 외 생계비/긴급 이사비 지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지원 등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텔공대위 피해지원TF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지원 사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2. 신고 및 수사 과정의 문제와 한계

디지털성폭력 피해의 양상을 확인하고, 범죄 행위를 밝혀 가해자를 색출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신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나. 이원화된 성폭력 사건 관할의 문제: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소외

디지털성폭력을 신고하러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가장 먼저 사건을 접수할 부서를 확인하는데 난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사이버수사팀 사이에서 서로의 영역이 아니라며 수사를 미루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여러 사람에게, 열린 공간에서 재차 피해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린다.

[사례 A]는 고소 접수만을 하러 방문한 상황인데 정식 진술조사가 아님에도 사이버팀으로 접수되어 진술하고, 여청팀 소관이라고 하여 여청팀에서 다시 진술해야했다. 여청팀에서 "유포죄와 소지죄는 관할이 다르다, 유포죄는 사이버팀에서, 소지죄는 여청팀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이다. 주된 범죄를 지목하지 않고 겹가지로 가지를 치면, 이렇게 관할 문제로 양 쪽 팀에서 반려하거나 서로 미루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수 차례 진술을 해야 했고, 몇 시간을 경찰서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디지털성폭력 사건과 피해자를 두고 핑퐁을 하는 이러한 상황은 올초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1월에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에서 경찰 수사의 전체 업무를 소관하게 된 이후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를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국수본 > 사이버수사국 >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폭력이 아닌 사건은 본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가 담당하게 되면서 이원화된 구조의 폐해를 피해자들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온/오프 공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행정 분류상 수사의 영역이 나뉘면서 피해자들은 같은 피해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공유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국선변호사 신청 등 피해자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국수본 내 디지털성범죄 수사 중 피해자 권리보장 및 보호 등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기존에 젠더폭력 범죄를 다루어왔던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성인지감수성에 기반한 수사의 필요성 및 피해자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왔던 과정과 맥락이 존재한다. 그러나 디지털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견된 이러한 피해자의 소외 혹은 배제는 디지털성폭력 사건의 관할을 사이버수사과에서 다루면서 성폭력 사건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문제다.

오프라인의 성폭력 사건과 온라인의 디지털성폭력을 다루는 각기 다른 두 개의 소관 부서가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디지털 성폭력사건 해결에 더 적합한 시스템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피해지원TF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 현재 이원화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기 보다는 사이버수사과의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젠더폭력의 이해 및 감수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 더 중요하다

- 기존에 성폭력 사건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 디지털성폭력 사건을 모두 담당하게 하고 인력을 확대하며, 디지털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여 성폭력 사건 전반에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유포·불안피해를 확인해줄 수 있는 역할도하도록 한다.

- 젠더에 기반한 성범죄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유는 좀 더 집중적인 사건 수사의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피해자들이 진술을 반복하여 수사과정에서의 피로감이나 부정적 경험이 더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부서 내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 또한 주된 이유일 수 있겠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성폭력 전담부서에 배치되는 사람은 강력반에서 오래 근무하였던 경력있는 사람들을 따로 트레이닝 시켜서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여전히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그저 증거인 불법 촬영물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 정도로 인식되기 쉽다. 불법촬영물 외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면 피해자와 연락할 방도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한 가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불법촬영물의 개수가 너무 많아도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요원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불법촬영물 내에 피해자의 정보가 삽입되어있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어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여기서 피해자의 배제 혹은 소외가 발생한다.

[사례 B]는 최초 디지털성폭력 피해 이후 경찰에 빠르게 신고했고 상담소의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다시 학업에 매진하는 등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추가 피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불법촬영물 유포와 소지가 확인되어

1심에서 유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변호사에게 합의 요청을 하는 바람에 알게 되었는데, 1심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가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불법촬영물이 [사례 B]로 확인된 범죄일람표가 버젓이 첨부되어 있었다. 가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부터 피해자가 특정된 상황이었으나, 1심 선고가 나기까지도 피해자인 [사례 B]에게는 아무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는 불법촬영물의 계속되는 유포와 어느 누구의 클라우드 혹은 하드웨어 안에 저장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형체 없는 불안 속에 계속 노출된다. 실제로 작년말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3월에 출범시켰던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서 9개월동안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성범죄자 3757명을 검거하고 24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인 ‘박사방’ ‘엔(n)번방’ 관련 피의자는 각각 222명, 804명에 달한다¹⁾. 이렇게 큰 규모의 범죄 공모와 가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례B]와 같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추가피해를 확인하고, 법적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특정 가능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상황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지 받을 권리가 있다²⁾. 디지털성폭력을 수사하는 경찰부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를 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 경찰의 태도 문제

경찰은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피해경험을 처음 말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이 때 처음 피해경험을 듣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이해하는 방식이나 피해 이후 후유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신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인식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건과 피해자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텔레그램성착취사건을 직접 신고한 피해자들 대다수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만나게된 경찰로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

- 1) 한겨레, 2020.12.30.일자,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3757명 검거, 245명 구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6533.html)
- 2) 한 피해자에게 일어나는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소지나 시청 등 추가 피해를 일일이 피해자가 알게되어 그 모든 피해의 규모를 확인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염려하여 파악된 피해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의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크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상상하고 강구하여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구조를 만들고 탄탄히 해야할 것이다.

[사례 C]는 처음 신고하러 갔을 때 경찰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의 특성에 대해 무지하여 피해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데 초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야 했고, 그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여러 명의 경찰에게 설명해야 했다.

[사례D]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피해 촬영물을 유포하는 가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에 방문하였다. 간략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변호사가 의견서 등으로 보안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담당 경찰이 “증거 목록에 공증도 안 받은 본인 탄원서 같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피해자를 힐난하였다. 사이버팀의 수사관은 “(피해촬영물을 가해자가) 새로이 촬영한 것이 아니니 죄가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설명하려하자 “언성 높이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건데 왜 언성을 높이냐” 등의 말을 하며, 고깝다는 표정을 내색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또 “해당 영상이 ([사례D]의) 피해영상물인지, 일반 음란물일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반문하면서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요청하는 것인데, “수사를 요청하려면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는 적대적이고, 수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례 E]는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신고를 위해 경찰을 찾았지만, 고압적인 태도의 경찰들에게 한 시간가량 둘러싸여 “피해 있으셨어요? 피해 없으셨잖아요” “왜 피해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네” “사람들이 말하는 개인정보 침해와 경찰이 말하는 개인정보 침해는 달라요” “정보 유출되고 금전 피해 같은 거 없었잖아요?” “속상하겠는데, 이 건 사건이 아니라 사안이에요” “핸드폰 잃어버렸던 거 아니에요? 핸드폰 언제 바꿨어요?” “[당사자가 개인정보 침해/명예훼손 아니냐고 하니] 아니, 나도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주는 거 아닌데 협조적으로 나오셔야지” 식의 이야기로 피해를 부정당하고, 의심당하고, 마치 피해자를 질책하는 듯한 상황에 놓였다. 수사관은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조심성 없이 이야기했고, 이어 다른 경찰들이 서서 구경하는 등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피해자의 범죄피해 신고 내용을 근거없이 신뢰하지 않거나, 의심하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들이다. 이 외에도 어차피 가해자를 못 잡는다거나, 수사가 어렵다거나, 법이 없다고 잘못 안내하여 반려하는 경우까지 디지털성폭력피해자를 대하는 경찰들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 피해자들은 위축될 뿐 아니라, 신고나 사건의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한 의지가 꺾이기 일쑤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경청하고,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존중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의지를 보인다면,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더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이며 수사관의 긍정적인 태도만으로도 피해의 치유과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같은 사실을 디지털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일선 경찰들이 꼭 알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라. 증거물 확보와 관리에 대한 지침의 부재

디지털성폭력사건은 그 무엇보다 빠른 증거확보와 유포 방지가 중요하다. 증거확보는 직접적인 삭제지원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이자,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신변이 확보된 즉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되길 기대한다. 압수수색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가해자가 수사의 낚시를 알아차리는 즉시 증거를 삭제해버려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꼴이 되기 쉽다. 다른 저장장치로 옮기는 것 또한 불과 몇초 안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습적이고 빠른 압수수색이야 말로 피해자가 느끼는 유포에 대한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가해자 소유의 전자통신 기기를 비롯한 클라우드 등의 외부 저장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해자의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우며, 그나마도 유효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 요즘은 동기화가 쉬운 클라우드나 외부 저장장치, 웹하드 등 온라인 저장공간 등도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해자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등 전자 기기를 압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압수수색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확보된 증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한데,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촬영물이 경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계속 사건 자료들과 함께 수사재판 관련인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불안해하기도 한다. 경찰이나 법조인들에게 피해촬영물은 증거물일 뿐일 수 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촬영물이 자신이 원치 않는 곳에 계속 보관되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 역시도 추가 피해의 가능성으로 해석되기 쉬워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때문에 확보된 증거물인 피해촬영물의 관리와 보안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환경이 만들어져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3. 현행법 및 지원 제도와 규모의 한계

가. 손해배상청구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많은 시민들이 텔공대위 활동을 응원하고,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마음을 담아 후원을 해주었는데, 그 중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되기를 희망하며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어 올해 3월에 (당시) 공대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적이 있다. 아래는 후원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들과 소통하던 와

중에 미성년자인 [사례 G]의 보호자가 공대위와 후원자들에 전하는 메시지 중 일부다.

(이전 생략) 이 달로 가해자 무리들 중에서 3번째까지 처벌이 확정되었으며 일부는 상고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가 실명으로 노출될 수 있음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공소시효또한 3년으로 22년 어느날이 되기 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한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엄마입장에서는 그리고 아직 도움 닿지 않는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마음에서는 어떤 합의도 불가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회복에 도움되거나 처벌에 무게를 더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모두 해보고 앞으로 닥칠지 모른 아이의 미래에 대해 대비를 하고 싶습니다. 5년 후 10년 후의 시간이 다가올때 다시 아이에게 닥칠 위험이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단지, 실명과 개인정보가 명백히 노출되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이오니 이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이후 생략)

성폭력 사건 형사고소 시, 가해자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일 때 피해자는 가명으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할 수 있다. 이처럼 가명조서 제도는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가해자의 행위를 진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해자에 의한 보복이나 해코지 등에 대한 불안을 현저히 덜 느낄 수 있게 된 피해자의 권리보장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이는 형사사건에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민사소송 시에는 성폭력 피해자도 자신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해자 측에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유죄를 받았더라도 선불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요원한 실정이다.

나. 무료법률구조 기금의 한계

성폭력 가해자 변호사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는 상황³⁾에서 피해자들도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고자하는 욕구가 높아졌다. 이에 법무부에서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 단계에서부터 직접 신청하여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국선변호사가 연락이 안되거나, 수임 중인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성실한 변호 업무 미비 등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3) 김보화, 2020,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비판과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참조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상담기관을 통해 피해자 변호사를 연계 받아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 무료법률구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1) **기금 부족** :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의원의 질의의 효과로 무료법률구조 예산이 추가 배정 되는 성과 있었다. 그러나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무료법률구조 기금이 소진된 상황이다. 총 3개의 위탁기관(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중 2개 기관(한국성폭력위기센터 8월, 대한변협 10월) 올해 예산 소진되었다. 이는 상담현장에서 체감되는 바, 연초에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지원되고, 하반기나 연말에 접수되면 지원 어려운 현실이다. 성폭력피해자로서 누구나 법률지원을 필요로할 때 바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인력 부족** : 예산 규모 확충 시 전담 인력의 추가 배정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현재 위기센터에는 무료법률구조기금 담당이 한 명 배정되어 있어 이미 접수와 승인 등의 절차 처리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 항고(한 달)나 제정신청(일주일) 등 시급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이 늦어지면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기금의 확충과 더불어 인력 확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구조비용액 세부기준 변경 방안

(1) **1인당 구조비용액 상한선(500만원) 과소 책정의 문제** : 피해자 1인당 구조비용액은 최대 500만원 (심급당 본안사건 120만원, 재정 및 항고 등 신청사건 40만원 기준)이다. 이는 피해자 1인이 중복피해(피해 다수)를 겪거나,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필요한 사법 절차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특히 텔레그램 사건의 경우, 다수의 가해자와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 가해자별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했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긴 했지만, 디지털성폭력 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둘 이상인 경우들이 많았고, 공대위에서 지원한 사건만 따졌을 때 확인된 가해자나 별건의 사건이 다섯 건 이상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2)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변경 필요**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경찰에 형사사건 불송치 권한이 생겼다. 때문에 이전보다 경찰단계에서의 적극적인 피해 진술과 대응이 필요해졌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된 경우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이의신청 절차가 더해졌다. 현재

심급당 지원 기준 중 1심 (120만원) 에는 사건 초기 수사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기준을 분리하여 신고(고소)부터 경찰수사단계까지를 추가로 한 심급(본안)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다. 피해자 치료비 예산 확충

피해자 치료비 지원이란 성폭력피해와 관련한 의료적 치료와 심리상담을 위한 비용 지원을 말한다. 각 성폭력상담소에서 병의원/심리상담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거나 피해자가 거주지 지자체 혹은 상담소에 직접 신청 가능하다. 이 역시 피해자 1인당 500만원 상한선(6개월 이내 소진 원칙)이다. 올해 서울시에서는 8월에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다. 지역별 소진 속도의 격차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각 지자체에 피해자들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산 소진되어 지급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신청해보시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미 상반기에 대부분의 예산이 소진된다는 것은 현재의 예산규모가 실제 필요한 지원규모에 크게 못미친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에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예산 규모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 원활한 주거지원 필요성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임금 노동이 어렵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 혹은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어 본인의 주거지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본인 가족에 의한 2차 피해로 인해 가족과 동거가 어려운 경우 등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거주지를 옮겨 생활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피해자는 본인의 안전과 평안을 확보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한데, 성폭력피해자로서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이 아닌,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 혹은 주거이전비 지원을 받은 것이 요원한 실정이다.

[사례 H]는 최근 주거지원 받았으나, 그 과정이 너무 길고, 다양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상황 등이 맞아야 해서 처음 주거지원을 요청한 지 1년이 초과되어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사례H]는 성폭력피해자로 지원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반 범죄피해자로 분류되어 지원받을 수 있었다.

성폭력피해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국가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피해확인서 제출 등 매 절차마다 자신의 피해를 증명 해야하고, 소득 관련 증빙을 첨부함으로써 현재의 곤궁함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

요하며, 앞의 과정을 통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추천서를 어렵사리 발급받더라도 SH/LH 등에 제출되어 심의과정에 참고자료가 될 뿐 우선순위에 들어가기 어렵다. 결국은 이 전 과정을 모두 거쳐 실제 주거지원을 받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낮추어 현행보다 더 현실적인 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서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필요성

신유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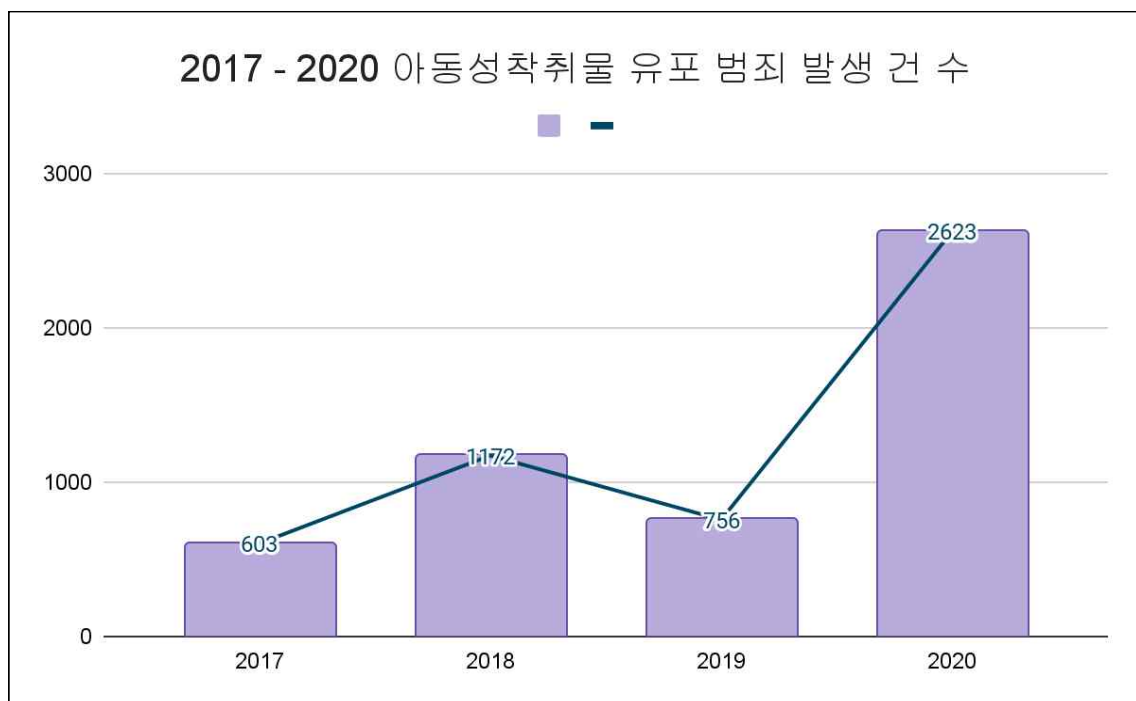
‘N번방 방지법’이 개정 및 시행된 지 1년여가 흘렀다. 그중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및 위반 시의 처벌 수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1년의 유예를 거쳐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고시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불법 촬영물 검색에 자주 쓰이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 결과로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또 불법 촬영물 검색에 자주 쓰이는 단어는 연관검색어로도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신고 기능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 통보하고,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해 신고서와 처리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현재 본 규제 기술 도입 시 서비스 장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업계의 반발이 있어 본격 시행 이후의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본 발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에 있어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단계적 시행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질적 플랫폼 제재를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 여전히 유포되고 있다

N번방 사건이 화제가 되고 가해자들이 구속되기 시작한 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피해 촬영물들이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다. 본 텔공대위에서 피해경험자 지원 및 대응에 함께 하는 사단법인 탁틴내일이 올해 4월 5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르면, 특정 신체 부위·행위 등을 가리키는 해시태그 122개가 검색됐다. 이 중 94개(77%)가 트위터에서 발견됐다. 피해 여성의 사진을 게재한 뒤 성희롱하는 '#지인능욕' 의뢰, '#영상거래' 등 불법 성영상을 유통하고 교환하는 식이다. 페이스북에서는 24개, 인스타그램 18개가 검색됐다.

한편 지난 10월에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성폭력 발생·검거 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성영상을 1366건, 아동성착취물 2623건, 불법 촬영물 842건 등 총 483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동성착취물이 2017년 603건에서 지난해 2623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에서 7월 통계에서는 아동성착취물 유포 범죄 발생이 690건이었다. 피해촬영물의 경우 2019년에 165건이었던 것에 반해 2020년에 되려 842건으로 급증했다. 1~7월에는 311건 발생했다.



이렇듯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온라인상의 피해 촬영물 유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본 센터가 올해 하반기 국내 웹하드를 모니터링한 바에 따르면, 피해 촬영물을 의미하는 '국산', '아마추어' 등의 검색 키워드 필터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으

며, 최근에는 일본 AV 등의 영상물을 위와 같은 키워드의 제목으로 유통하는, 즉 마치 성인물이 피해 촬영물인 척하는 피해 촬영 '컨셉'물이 유통 중인 현상도 확인하였다. 즉, 피해 촬영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이를 소비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검색어를 피해 촬영물인 척 설정해둔 것이다. 또 최근에는 개인의 작품이나 재능에 돈을 지불 하는 방식의 해외 펀딩 사이트인 '온리팬스'에서 성착취물이 만연하게 거래되고 있다. 유포범들은 SNS 등을 통해 온리팬스 계정을 홍보하고, 구매자들은 해당 계정에 찾아가 정해진 금액만 지불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피해촬영물을 시청 및 소지할 수 있다. 현재 온리팬스는 한국 인터넷망으로 VPN 우회 없이도 바로 접근이 가능한 공개적인 사이트이나, 성기가 드러나는 적나라한 성적 행위를 찍어 올리는 계정도 만연하며 이러한 온리팬스에 국내 이용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2. 개정되어 시행되는 법률안 소개

2020년 6월 9일,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1항의 정통방법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행한 후, 이를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3항이 개정 되었으며, 6항을 신설하여 3항의 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다시 말해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즉 웹하드 회사가 필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일을 막아 두 업체 간에 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항이 전반적으로 세분화되고 강화되어 피해촬영물에 대한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강화되었다. 또 주목할 점은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의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징금 관련 조항도 강화되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고,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벌칙에 관한 법령도 강화되었다. 제95조의2(벌칙)에서, 1항의 2에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1항의 3에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가 세부 추가 되었다. 그리고 제96조(벌칙)에서는 6항의 2에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가 추가되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신·구 개정안 비교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 22 조 의 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또는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제 22 조 의 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

	<p>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p>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 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p> <p>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p> <p>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p>
--	---	--

<p>제 22조의 6 (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p>	<p><신 설></p>	<p>여서는 아니 된다.</p> <p>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 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p>
<p>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p>	<p><신 설></p>	<p>3의3.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p> <p>3의4.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p> <p>3의5.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p>
<p>제 95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p>	<p><신 설></p>	<p>1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p>

에 처한다.		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6의2.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3. 개정되었어도 여전한 공백

1) 증거가 소용이 없다

이러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본격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촬영물 유통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지 다소 미지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개정안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즉 웹하드가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기록 및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다시 말해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적용한 기록인 로그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이 로그 기록의 경우, 해당 필터링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 외의 사람이 이를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웹하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 불이행으로 불법 영상물을 유통한 정황을 수사기관이 포착하여 의무 기록해둔 로그 기록을 전부 압수해 조사하더라도 고의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사실 이러한 기술적 조치 우회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되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도 뾰족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2) 성폭력 처벌법상 입법 공백, 온라인 성착취 구조 기획운영자 처벌법

문형욱, 조주빈, 손정우와 같은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들의 공통점은 피해 촬영물을 착취할 체계를 만들고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더 많은 성착취물이나 피해자를 구해오는 일원일수록 더 많은 피해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성착취를 저지르기 위해 분업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획운영자’들은 시스템을 통해 범죄의 규모와 범위가 매우 넓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소로 가중처벌할 법령이나 양형 인자가 부재한다. 결국 손정우의 경우 저지른 범죄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고 문형욱과 조주빈 그리고 많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들도 해당 부분의 심각성이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박사방과 N번방 가해자들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기는 하였다. 해당 법률이 온라인상의 조직범죄에 최초로 적용된 점은 유의미하나, 성착취 범죄에 정확히 들어맞는 법령은 아니다. 사이버 성폭력 문제에는 직접 성폭력을 행하는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가해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조직화하며 온라인 성착취 구조를 기획한 운영자라는 가해자가 함께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은 정식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정보통신망법상의 형사적 처벌 내용과 형량은 제한적이며 이와 같은 행위를 성폭력으로 제대로 드러내고 명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4.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디지털 성폭력, 특히 유포 범죄는 그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종결되기가 어렵다. 온라인상의 데이터는 어디로 퍼져나가 누가 소지하게 되었는지 전부 추적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포 후의 삭제 지원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유포가 되지 않도록, 유포를 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하는 일이 중요하다. 즉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포가 이뤄질 수 없도록 강한 제재와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사업법의 사업자 의무가 주 유포 플랫폼들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을 수행했다는 증거로 남긴 로그 기록을 해당 개발자가 아니면, 즉 업체 관계자가 아니면 해석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듯 실효성이 없는 의무 조항은 제도의 공백을 만든 물론 오히려 웹하드 업체에게 의무를 모두 수행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면책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불

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현장 점검 및 의무 제도가 실질적인 제재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10일부터 본격 시행될 개정안에서 의무화한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과 투명성 보고서 역시 지속해서 관리되어야 하겠다.

2)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N번방 방지법 일환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유의미한 개정이므로 앞으로 본 법률을 해외 사업자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실제 처벌까지 이어져야 하겠다. 그간 해외 사업자의 경우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아 한국의 사법기관에서 사건 관련 증거를 요청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없는 영미권처럼 해당 국가에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역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설된 개정안을 통해 해외 수사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수사 공조하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 역시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겠다.

최근 세계적 SNS 기업 중 하나인 트위터에서 자체적으로 불법 영상물 유통은 제보를 받아 신속히 조치하는 내부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플랫폼 차원의 조치 역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해외 플랫폼 점검 및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유포자 검거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수사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해외 플랫폼에도 국내 법과 같은 제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와의 다방면의 소통과 협업을 정부 차원에서 이어가야 하겠다. 하여 N번방 사건의 주 유통 플랫폼이었던 대표적 해외 사업자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의 플랫폼에서도 선제적인 관리와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3) 강력 처벌의 선례를 남겨야 한다.

현재 양진호의 경우 특수 폭행 등의 혐의는 선고가 내려졌지만,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하여서는 사건이 알려진 후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항 영리 목적의 유포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의 수위도 낮을 전망이다. 양진호가 한창 웹하드 카르텔을 운영하던 2016년에는 웹하드 1

일 평균 음란물 유통량이 53,751건에 달했다. 양진호는 웹하드를 통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의 피해 촬영물을 팔아 번 막대한 수익을 탈세와 횡령으로 빼돌렸고, 걷는 로봇개발 등에 200억 이상 투자하며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이름을 얻고자 하는 데 이용하였다. 이런 인물이 피해영상을 판 행위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사회 구성원이 이 사회가 성착취물 유통과 그를 이용해 돈을 버는 행위를 심각한 범죄이자 행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로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손정우와 같은 이도 마찬가지로이다. 이런 범죄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법적으로 제대로 된 짓값을 치르지 않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4) 온라인 성착취 ‘기획운영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성폭력처벌법, 아동법 내 신설되어야 한다.

양진호, 손정우의 미약한 처벌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상의 성착취를 구조를 만들고 조직하여 행하는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성폭법과 아동법 내 신설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통망법의 개정도 웹하드 점검 방식과 기록 보관 규정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 불법 정보를 유통하거나 필터링 기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증명하여 해당 사업자가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위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범죄는 여성을 타겟으로 하여 착취하고 이용해 돈을 버는 명백한 여성폭력이며 여성착취이므로 성폭법 내에 강력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여성에 대한 성착취 구조 자체를 벌하고 규제해야 한다.

FM

FM

텔레그램 성착취 이후, 남은 법적 과제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텔레그램 성착취 이후, 남은 법적 과제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텔레그램 성착취의 공론화 이후 변화와 한계

▪ '더 이상 신체적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의 경계는 없다'

: 텔레그램 성착취 공론화 이후,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분노 표출

: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사법체계와 운영에 대한 비판

- 벌금형 위주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적용 한계

- 2019년 손정우 아동음란물유포 등에 대한 징역 1년 6월에 대한 사회 공분

: 적극적 수사를 통한 다수 범인 검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디지털성범죄 형량 강화

: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 등, 허위영상물, 유포협박, 온라인 그루밍 등 처벌범위 확대, 양형기준 강화

: 아동인 경우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물이라는 법적 개념 변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여전하다'

: 사회적 이목을 받은 사건과 아닌 사건의 형량 차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소극적 대응 등

현행 형사법체계의 한계, 그로 인한 수사·재판과정의 한계(1)

▪ 신체적 성폭력 중심의 형사법체계

: 전통적인 성폭력인 신체접촉이 수반된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

- 강간 등 성기삽입행위에 중심을 둔 성폭력범죄의 구성

- 성기삽입이외의 성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개념화: '성적 수치심'

- '성적 수치심'의 기초는 '음란', '외설'이라는 법적 개념

※ 음란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2003도6514)"

: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소외

- 신체적 성폭력범죄보다 낮은 법정형 설정

※ 강간(3년이상), 강제추행(10년이하 1500만원 이하)/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이하 2천만원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7년이하 5천만원이하)

- 성기삽입이외 성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개념인 '성적 수치심'을 그대로 가져와 구성요건으로 명문화(성적 수치심, 성적 욕망)

현행 형사법체계의 한계, 그로 인한 수사·재판과정의 한계(2)

■ 신체적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 보호법익의 설정으로 인한 문제(1)

: 신체적 성폭력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

- 형법상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신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의사에 반해 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
- 강제추행과 같이 삽입행위 이외의 성적 행위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원하지 않음'이라는 피해자의 거부와 결합하여 해석됨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2001도241, 2016도17733 등)

: 비신체적인 성폭력인 디지털 성폭력의 보호법익

- 성적 자기결정권 이외에도 일반적 인격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의 확립을 제시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타인이 보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2018도9775판결)

현행 형사법체계의 한계, 그로 인한 수사·재판과정의 한계(3)

■ 신체적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 보호법익의 설정으로 인한 문제(2)

※ 카메라이용등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 디지털 성폭력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해석의 한계

- 대면, 신체접촉을 중심으로 하는 신체적 성폭력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는 대면과 신체적 접촉이 있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판단 (범죄자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했는지를 인식 가능)
- 디지털 성폭력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당하거나 음란물을 접하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유포, 시청, 소지, 편집 등의 행위로 인해 자신이 원치 않는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대상이 되어 비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그 침해가 발생하므로, 해당 행위가 광범위하고 범죄자는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없다고 여겨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판단하기 어려움**
- 이러한 한계로 법원은 일반적 인격권 보호나 건전한 성풍속 등 사회적 법익을 제시하나, 해당 법익 침해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현행 형사법체계의 한계, 그로 인한 수사·재판과정의 한계(4)

▪ 신체적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 보호법익의 설정으로 인한 문제(3)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디지털 성폭력 침해에 대한 대응 한계

- 음란물이 아니라 피해촬영물임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 → 피해자가 등장해야 피해물임이 확인가능
- 피해자가 등장한다고 해도 해당 행위가 피해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 → 음란물인지, 피해물인지 알 수 없음
- 신체나 재산 등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이외의 피해를 법익 침해로 인식하지 못함 → 형집행 유예, 벌금형 다수
- 신체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은 언어적 성폭력이나 가상 정체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상화 배제 등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1)

▪ 디지털 성폭력의 보호법익 재설정(1)

: 성적 자기결정권 이외에 침해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보호법익 설정 필요

- 최근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을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인용하면서도, 이 때 성적 자유를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라고 명시(2019도16258)
-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디지털 성폭력의 침해에 가까이 가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확대해석한 것
-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신체적 성폭력을 중심으로 구축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판례의 변경없이 해석을 확장하는 것만으로 종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2)

▪ 디지털 성폭력의 보호법익 재설정(2)

: '성적 인격권'이라는 보호법익 제안

- 디지털과 네트워크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신체와 신체를 중심으로 한 인격의 개념은 종전과는 달리 확장되고 있으며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의 개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체와 연관된 내지 신체에 부착되지 않은 인격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음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즉 인격을 형성, 유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임
- 원치 않는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권리는 자신의 성적인 인격권을 형성, 유지, 보호할 권리를 소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자 디지털 성폭력의 보호법익이 될 수 있음
- 성적 인격권이 디지털 성폭력의 온전한 보호법익으로 설정하고 디지털성폭력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해석 기준으로 삼는다면, 피해물이 얼마나 음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여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데에 참여함으로써 성적 인격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가 범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음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토론 자료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① 그간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단속 현황

(단속 연혁) 경찰은 ① 2016년 해외에 서버 둔 성착취물 공유사이트인 ‘소라넷’ 폐쇄를 시작으로 ② 2018년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3,847명 검거, 136명 구속)과 다크웹에 기반을 둔 세계최대 아동성착취물 유통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를 검거하고, ③ 2019년 1·2차에 걸쳐 ‘웹하드 카르텔 단속’(1,066명 검거 30명 구속)에 이어 ④ 2020년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주범과 주요 공범을 검거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해 사이버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해 왔음.



(범죄양상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변화된 환경에 따라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성범죄 역시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진화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음.

기존 해외불법유포사이트, 국내웹하드 사이트 등 공개적 유통매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 유포하는 형태에서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폐쇄적 보안메신저를 활용한 범죄 수단이 다변화하였으며,

과거 변형 카메라를 매개로 한 비동의 촬영·유포 범죄 형태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해 대면접촉 없이 협박·강요에 의해 피해자가 직접 촬영·제공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악질적인 형태로 범죄양상이 변모하였음.

(체계적·종합적 대응) 지난해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검거(3. 16.)를 기점으로 폭발한 디지털성범죄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관련 BH 국민청원 5건에 약 620만명 동의(4. 19. 청원 마감)

경찰청과 전국 경찰관서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단)」를 설치(3. 25.)·운영하여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2,805건 3,575명 검거하고 피해자 1,094명에 대해 4,387회 보호·지원하였음.

(디지털성범죄 실체규명) ‘갯갯’, ‘박사’ 등 주요 범인의 신속한 검거를 통해 범죄조직 형태·수익구조 등 악질적인 디지털성착취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였고,

※ 범죄단체와 같이 운영자와 공범, 적극 가담자는 성착취물 제작 목적으로 결성된 결합체로 보고 ‘범죄집단 조직·가입죄’ 적용

△ (기존 범행방식) 오프라인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유통

△ (신종 범행방식)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물론, 제작을 위한 협박·기망 등도 모두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져, 범인들도 서로를 알지 못한 채 공동으로 범행

(신상공개)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을 위해 신상공개 절차에 따라 ‘박사 조주빈’, ‘갯갯 문형욱’ 등 주요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공범 등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하였음.

※ 특히, ‘박사’ 조주빈의 신상공개는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신상공개 한 최초 사례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

(사회인식 전환) 대대적인 단속·신상공개·언론보도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엄정하게 처벌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기여하였음.

※ '21. 10. 14. 디지털성범죄 최초로 범죄집단조직 적용, ‘박사방’ 운영자 징역 42년 확정

(제도개선의 계기) 디지털 성범죄가 ‘돈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19년 경찰의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권 부여 필요성」 법률개정을 추진, '20년 6월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0

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법제화」를 추진하여, '21. 3월 법률을 개정하여 9. 24.부터 위장수사를 활용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음.

(범정부 대응) 또한, 경찰청은 여가부·방통위·방심위 간 업무 협약 체결('19. 11. 12.)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기반으로 기관별(여가부-방통위-방심위) 수집·공유하는 피해영상 특징값 정보(해시값·영상 DNA)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동대응 DB를 구축해 삭제·차단 등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있음.

② 21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사항

(종합 대응 추진) 경찰은 '21년에도 범인 검거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연계 및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추진 하였음.

(단속) '21년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1,625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97명을 구속하였음.

(피해자 보호·지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 신고시 동성 경찰관을 1:1로 지정하여, △피해자 권리안내 △사후 모니터링 △수사사항 통지 △신변보호 △국선변호사 선임 △영상삭제 지원 △전문기관 연계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쏠 수사 과정에 걸쳐 보호·지원토록 하였음.

구분 합계	영상삭제 지원·연계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연계	신변보호 요청	국선변호사 선임 요청	신뢰관계자 등 동석	진술녹화	가명조서 작성
1,037건	228건	114건	41건	157건	160건	84건	253건

(삭제·차단) 경찰은,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범인을 검거한 이후에도 피해 영상의 재유포 범죄로 인한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들을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기관(여가부·방심위·방통위)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삭제·

차단 요청하고 있음.

(시스템 고도화) 또한, 최근 인공지능 안면인식 및 영상 DNA 기술 활용하여, 불법허위영상물 탐지를 고도화하고 시스템을 기존 유관기관에서 자치단체로 확대 연계하는 등 피해영상물 재유포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 유통방지 관련 정책 현황

김미정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① 인터넷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 강화, 과징금제 도입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국회·방통위·사업자 간담회('20.4.27.), 법안 발의('20.5.4, 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및 본회의 통과('20.5.20), 국무회의('20.6.2), 공포('20.6.9.)

- 웹하드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물 재유통 방지를 위해 웹하드사업자의 불법음란물 기술적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2천만원→5**

※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천만원) 상향 등

-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신고·삭제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신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

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부가통신사업자에 필터링 등 사전적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하고, 삭제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

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자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방통위에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 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해외사업자 역외적용 규정 도입

○ 해외사업자에 명확한 의무부과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에 역외규정 도입

※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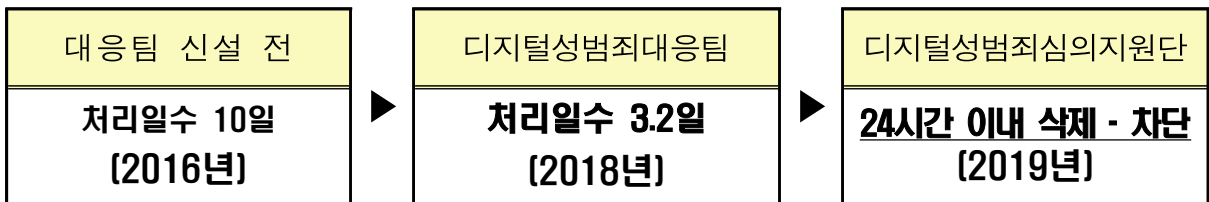
③ 삭제절차 간소화(先삭제, 後심의)

- 신고 후 영상물 삭제까지 현재 24시간 내 처리하고 있으나, 보다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본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先삭제(자율조치) 요청 및 긴급심의 실시

④ 피해자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

- 야간시간대 피해자 상담 및 삭제 지원이 취약한 점을 개선, 영상물 삭제·상담·수사지원을 24시간 종합 지원하는 체계 강화(계속)
- 선제적·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소요기간 단축 : 24시간 이내 >



⑤ ‘사이버안심존’ 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 도입

- 디지털 성착취 위협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안심존 SW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 도입 및 보급(‘20.5.29~)

⑥ 학생, 가출 청소년, 군장병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 디지털 성범죄 사례, 다각적 관점에서의 대처·예방 방법 등 학부모 대상(유아, 초등, 중·고등 총 3종)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20.6)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실적 >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6월 말
청 소 년	10,654	10,000	10,000	10,000
성 인	30,152	31,011	32,580	1,580

<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 주요 내용 >

유아 학부모용	초등 학부모용	중고등 학부모용
<p>2. 사이버폭력에 대처하기</p> <p>6) 사이버 성폭력 사례</p> <p>악의적 사진 합성, 인터넷에 퍼지고 악성 소문</p> <p>장난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보여달라고 할</p> <p>시범방 사건, 2020년</p> <p>출처: SBS 뉴스, 출처: SBS 뉴스, 출처: 유튜브 영상 캡처</p> <p>NIA 한국정보통신위원회</p>	<p>2. 사이버폭력에 대처하기</p> <p>7) 다각적 관점에서의 대처</p> <p>가해자 관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폭력은 폭력임을 인지시키기 가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심리상담 필요 <p>주변인 관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시하거나 대화창을 나오기 직접적인 중재가 어려울 시, 기록해 두기 피해자를 위해 가관이나 지도자에게 상담요청 하기 <p>피해자 관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명한 거부 의사 표현하기 증거자료 확보하기 주변/관련 기관 도움 요청하기 <p>출처: 유튜브 영상 캡처</p> <p>NIA 한국정보통신위원회</p>	<p>5. 사이버폭력 대처하기</p> <p>5-1. 사이버폭력 대처하기</p> <p>사례 3) 중학생이 여학생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사건</p> <p>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한 이 사건은 심각한 학교폭력에 해당</p> <p>출처: 유튜브 영상 캡처</p> <p>NIA 한국정보통신위원회</p>

디지털 성범죄 사례, 예방 가이드, 가·피해 자녀 관점에서의 대처방법 등

